

창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580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나58008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4. 6 선고 2021가소601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영준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변론 종결 2023. 3. 24.

판결 선고 2023. 4. 28.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4. 6. 선고 2021가소601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84,5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2. 4. 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2022. 4.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2. 6. 8.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22. 6. 1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22. 6. 8. 판결정본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피고가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기초 사실

가. C의 사망 및 그 상속관계

- 1) 부부인 C과 D는 그 사이에 장녀 E, 장남 F, 차녀 G, 삼녀 H, 차남 I, 사녀 J, 삼남 원고 총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C은 1979. 10. 10.에, D는 1995. 12. 18.에 각각 사망하였다.
- 2) C의 장남인 F는 2010. 4. 27.에, 차녀인 G는 2017. 7. 12. 각각 사망하였는데, F의 상속인으로는 K 등 5명이 있고, G의 상속인으로는 L 등 4명이 있다.
- 3) C의 장녀인 E는 2020. 3. 12.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5명의 자녀와 배우자인 B이 있다(이하 C과 D의 공동상속인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C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

-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사망하였고, 2018년경 이 사건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 2)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8. 4. 30. 제1 내지 3 부동산을 244,000,000원에, 같은 날 제4 내지 6 부동산을 279,000,000원에, 2018. 5. 31. 제7 부동산을 126,800,000원에 각각 매도하였으며, 그 매매에 관한 업무처리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다.
- 3) 이후 이 사건 상속인들은 2018.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10. 10.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649,800,000원에서 등기비 등 법무사 비용 7,026,330원, 공인중개사 중개료 등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32,773,670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안분하는 내용의 분배표를 작성하였다.

E, G, H, J	각 572/7392	G가 2017. 7. 12. 사망함에 따라 G의 공동상속인 4명이 G의 지분을 상속함
F	2112/7392	F가 2010. 4. 27. 사망함에 따라 F의 공동상속인 5명이 F의 지분을 상속함
I, 원고	각 1496/7392	
합계:	1	

4) 원고는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분배금을 받아 2018. 7. 2. E의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E의 자녀인 피고의 계좌로 같은 날 6,000,000원, 2018. 8. 13.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상속인들 중 I와 E는 2018. 7. 2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배금에서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8933,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E의 상속분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H·J의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J에 대한 증인신청 등을 하였으나,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9. 10. 16. "원고는 I에게 113,473,992원, E에게 21,092,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9나321410), 항소심 계속 중에 E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E의 공동상속인 6명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에서 'E(자녀 피고)는 지분 16,000,000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의 확인서(갑 제2호증)1) 를 증거로 추가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7.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을 '피고 등 E의 공동상속인 6명에게 각 3,515,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에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은 이 사건 분배금 중 E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45,092,742원에서 원고가 2018. 7. 2. E에게 지급한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92,742원에 피고의 상속지분 1/6을 곱하여 산정한 3,515,457원[$(45,092,742\text{원} - 24,000,000\text{원}) \times 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E의 상속분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6,000,000원에서 E의 상속분 중 피고가 상속한 3,515,457원을 공제한 나머지 12,484,5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배금에서 G, H, J에게 지급해야 할 각 상속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도와준 대가(이하 '수고비'라 한다)로 합계 14,0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E의 상속분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E의 상속분으로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소송은 당사자가 동일하고 분쟁의 기초도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인 '원고가 E의 상속분으로 24,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J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나 피고 명의의 확인서(갑 제2호증)는 이미 관련 소송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성이 있는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상속금액합의서(갑 제3호증)에는 'C의 네 딸들(E, G, H, J)이 그 상속분으로 각 50,102,241원 중 40,000,000원을 받고, 나머지 10,102,241원은 세금·기타경비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E 등 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C의 네 딸들이 이 사건 분배금에서 받아야 할 구체적 상속분은 각 48,964,629원($= 632,773,670\text{원} \times \text{각 } 572/7392$)인데, 상속금액합의서에 기재된 상속분은 이와 달라 그 내용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당시 G가 이미 사망하여 G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금액합의서 작성에 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중 상속인 한 명의 이름('L')만이 적혀있는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상속금액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E의 계좌로 상속분 24,000,000원을 송금한 일자에 피고의 계좌에도 6,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미 원고가 E의 계좌를 알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상속분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에게 우선 24,000,000원을 송금해주었으나, E의 자식들이 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까닭에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0,000원과 현금 2,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소장 중 3쪽 참조).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같은 날 E와 피고에게 돈을 보내었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그 지급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만든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시기나 장소, 그 현금의 조달 경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다.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을 제2호증의 4)에서 피고에게 준 돈을 가리켜 계좌이체로 보낸 돈을 뜻하는 "부처준 돈"이라고 표현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돈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피고가 2020. 4. 16. 통화한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제1호증)2)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G, H, J의 상속분이 각 40,000,000원으로 정해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 때 삼촌(원고)이 또 내보고 'B 니가 L하고 이모 둘이 하고 그렇게 그래 합의를 봐주면 니한테 충분히 내가 보상을 좀 해줄게' 삼촌이 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원고가 "그렇지."라고 긍정하는 대답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G 등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분을 줄인 것에 대한 수고비로 14,000,000원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마) 원고는 관련 소송의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9. 10. 27. 피고에게 "법원 결판이 났는데 M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천얼마를 물어줘야 한단다. 변호사가 말하길 니가 말 한 마디만 해주면 해결이 된대. 해결만 되면 천만 원 니 줄게. M는 주기 싫다."라는 문자메시지(을 제2호증의 1)를 보내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3,515,457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하여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거나 E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10,000,0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와 행동,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에게 돈을 반환해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14,000,000원은 E의 상속분이 아니라 원고의 요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수고비라고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구년

판사정수미

판사강웅

별지

1)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갑 제2호증(확인서)은 관련 소송에서는 '을 제13호증'으로

제출되었다(피고의 2023. 3. 27.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매매대금반환 사건의 2020. 4. 13.자 서증목록' 참조).

2) 원고는 녹취록(을 제1호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2023. 4. 19.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녹취록은 원본인 녹음파일을 그대로 녹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